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1-35호
2021. 4. 29.(목)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공 고(2)

-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공고 제2021-477호) 1
- 대전상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안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공고 제2021-493호) 4

공 람									
--------	--	--	--	--	--	--	--	--	--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가. 공시기준일: 2021년 1월 1일

나. 대상: 대전광역시 대덕구 옛신탄진로 235(오정동 9-20번지) 외 10,699호

다. 공시사항: 개별주택의 소재지, 개별주택가격 등

라. 열람장소: 대덕구청 세무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세정도우미(<http://daejeon.go.kr/tax/index.do>)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2.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2021. 4. 29. ~ 5. 28.

나. 신청인: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 신청방법: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대덕구청 세무과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 세정도우미, 일사편리 홈페이지에 제출

라. 결과통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끝.

이의신청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은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대덕구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604호의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21. 1. 1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 2인이 표준주택을 감정 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같은 용도지역 안에 있고 주건물 구조가 같거나 유사한 표준주택과 주택특성상 차이만큼 가격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실 때는

대덕구청 세무과 및 대전시 홈페이지 세정도우미(<http://daejeon.go.kr/tax/index.do>), 일사편리 홈페이지(<http://kras.go.kr>)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대전상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대전상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기간(예정): 2021년 ~ 2029년

지구명	위치	면적	지구지정 제안자 명칭(성명) 및 주소
대전상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와동 일대	260,262m ²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2. 공람기간 및 장소

열람기간	공람장소
2021년 4월 29일 ~ 2021년 5월 13일(14일간)	대덕구청(도시계획과)

※ 열람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2021. 4. 29. ~ 2021. 5. 13. (14일간)

나.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직접, 우편 또는 팩스 제출
다. 제출장소: 대덕구청(도시계획과)

-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FAX. 042-608-3841)

※ 공휴일에는 대덕구청 당직실에서 공람 가능

라. 기타: 본 열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 결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대덕구청 도시계획과(☎042-608-5373)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지역균형개발부(☎042-470-0331)

4.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가. ‘대전상서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는 의견 청취 공고일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위 제한이 적용되며,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 허가 전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가)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나) 인공 시설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다)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라) 토석의 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토지의 분할·합병

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사)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2)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다)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 라)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 마) 주택지구에서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바)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 (경작지에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계획과(☎042-608-5373),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지역균형개발부(☎042-470-03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